

# 예천읍 종합감사 결과 공개

## 감사개요

 감사기간 : 2014. 3. 4. ~ 3. 7.(4일간)

 감사범위 : 2012. 3. 13.이후 업무전반

 감 사 반 : 법무감사담당 외 5명

 중점 감사내용

- 세출예산 집행의 적정여부
- 정부지원사업 관련 관리실태
- 각종 민원 및 업무처리 실태 적정여부 등

## 감사결과

### ○ 행정상 조치

- 본 처분 15건(시정 10, 주의 5)

### ○ 재정상 조치

- 4건 1,819,610원(회수 2건 585,000, 지급 2건 1,234,610)

## 지적사항

### 1. 도로·하천부지 업무 처리 부적정

- 도로법 제41조(점용료의 징수)규정에 의거 도로 점용료를 징수 할 경우에는 예천군재무회계규칙 제33조(징수결정통지)에 의거 징수결의 한 후에 점용료를 수납하여야 하나, 도로점용료 징수결의서에 결재를 득하지 아니하고 43,600원을 징수하였고,
- 하천법 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점용허가의 신청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하천점용 등 허가의 신청)에 의거 하천 점용허가를 한 경우에는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하천의 권리·의무 신고서 서류를 접수도 하지 않고 점용허가  
▶ 철저한 업무연찬으로 이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 요구.

### 2. 당직자 및 초과근무자 보안점검 소홀

- 예천군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에 대한 규칙 제10조(당직근무자의 위치)에 무인자동경보시스템을 설치한 기관 중 숙직을 무인화한 기관의 당직근무자는 비상 연락망을 유지하여 재택근무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제13조(당직근무자의 일반업무)에 당직근무자는 당직업무를 철저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방□□\*급 ○○○외 8명은 당직 및 초과 근무를 하면서 최종퇴청시 보안점검 소홀  
▶ 철저한 업무연찬으로 이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 요구.

### 3. 무상지급된 일반용 쓰레기봉투 반납 소홀

- 예천군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예천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제12조 규정에 의거 무상 지급된 일반용 쓰레기봉투에 대하여, 2013년 1/4분기, 4/4분기에 장기출타 등으로 반납된 10리터용 일반용 쓰레기봉투 72매를 반납 공문만 작성하고 쓰레기봉투 수불부에 기재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반납된 일반용 쓰레기봉투 72매를 쓰레기봉투 수불부에 작성하고, 철저한 업무연찬으로 이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 요구.

#### 4. 통합사례관리 종결가구 사후관리 소홀

- 2013년 읍면동 사회복지 업무안내에 통합사례관리 종결가구는 종결 후, 6개월 단위로 1회씩 총 2번 실시하고, 만족도 조사도 병행 실시하라고 되어있음에도, 2013년도 2회 통보된 ○○○ 외 33가구에 대하여 6개월 내에 방문상담을 실시하고 모니터 상담지를 작성하여 행복e음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하나 사후관리 소홀
- ▶ 철저한 업무연찬으로 이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 요구.

#### 5. 환경미화원 가족수당 지급 부적정

- 예천군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 제68조(임금의 종류), 제69조(임금지급) 및 환경미화원 인건비 예산편성 기준에 의하면 무기계약근로자의 가족수당은 부양에 포함되는 셋째 자녀부터는 30,000원을 추가하여 지급하여야 하는데도, 2012년도 환경미화원 가족수당 지급시 ○○○ 외 1명에 대하여 주민등록등본상 셋째자녀를 확인하지 않고 착오계상으로 인하여 가족수당 840,000원을 과소 지급
- ▶ 미지급한 가족수당 840,000원을 지급하고 관련법규 업무연찬으로 이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 요구

#### 6. 세출예산의 목적외 사용

- 지방재정법 제4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에서 정한 각 정책사업 간에 이용할 수 없으며,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도 세출예산의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며 세출예산 집행 금지사항으로 정하고 있음에도, 예산편성에 행정 운영 기본경비 사무관리비에 편성된 예산을 민원접대용 음료 및 다과구입 외 4건, 2,902천원을 집행하여 예산의 목적 외 사용한 사실이 있음
- ▶ 철저한 업무연찬으로 이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 요구.

#### 7. 환경미화원 연차유급휴가수당 지급 부적정

- 예천군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 제30조에 의거 연차유급휴가를 미 실시한 환경미화원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수당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2012년, 2013년 연차유급휴가수당 지급 시 환경미화원 ○○○ 외 6명에 대하여 휴가일수 착오계상으로 394,610원 미지급
- ▶ 미지급한 연차유급수당 394,610원을 지급하고 관련법규 업무연찬으로 이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 요구

## 8. 물품 검사조서 미징구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7조(검사)에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이 끝나면 이를 확인하고, 검사를 하는 자는 검사조서(계약금액 3천만원 이하 생략)를 작성하여야 함에도, □□□ 화장실 보수공사 시행에 대하여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상 인데도 검사조서를 작성하지 않고 물품대금 지급
  - ▶ 물품대금 지급시 관련법규 업무연찬으로 이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 요구

## 9. 환경관리비 및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지급 부적정

- 환경관리비는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5제3항및같은법시행규칙 제53조의 제2항에 의하면 건설공사 현장에 설치하는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같은법 시행규칙 제53조의제2항에 건설업자는 환경관리비의 사용계획을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발주자는 확인한 비용의 사용 실적에 따라 합산정산토록 되어 있음.
-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의6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2조와 제32조의3에 따라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13-47호)제7조(사용기준)에 따라 건설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사용기준에 적합하게 사용하고 정산지급토록 되어 있음에도 □□□ 배수지 설치공사 외 3건에 대하여 환경관리비 사용계획을 건설업자로부터 제출받지 않았고, 환경관리비로 정산할 수 없는 일반용부직포 등을 사용하였고, 보건안전관리비에 대해서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가 되지 않은 안전관리자로 자격미달자에게 인건비를 지급 하였으며 총 5건 395천원 과다지급
  - ▶ 과다 지급된 환경보전비 315,000원과 안전관리자 인건비 80,000원을 회수 하고, 준공검사 시 철저한 현장 확인으로 이후 동일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 요구

## 10. 공사비 미 정산 과다 지급

-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건설표준품셈, 공사원가계산 적용기준, 설계기준철, 현장여건 등을 면밀히 검토· 조사하여 적정한 공사비를 산정이 되도록 설계를 하여야 함에도, □□□ 배수로 설치공사 외 2건에 대하여 단가산출서상 덤프트럭 적재시간(t1)10분 초과에 대하여 재료비에서 t1(10분)의 비율

만큼 공제하여 단가산출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 배수로 설치공사 외 2건에 대하여 설계변경이나 정산조치 없이 준공급을 지급하여 도금액 기준 190천원(제경비포함)을 과다 지급

- ▶ 과다 지급된 공사비 190,000원을 회수하고, 준공검사 시 철저한 현장 확인으로 이후 동일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 요구.

## 11. 다목적 농가형 저온저장고 사후관리 소홀

- 과실, 채소류 등의 수확기 홍수출하 방지로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을 위해 지원된 2012년, 2013년 다목적 농가형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추진계획【농정과-3274(2012.02.24)】,【농정과-2436(2013.02.13)】호에 의거 읍면에서는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10년간 보조지원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토록 되어 있으나, 2012년, 2013년에 지원된 다목적 농가형 저온저장고에 대하여 사후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함
- ▶ 철저한 업무연찬으로 이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 요구.

## 12. 농지임대차계약 확인대장 작성 누락

- 농지법 제24조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제3항에 의하면 시·구·읍·면의 장은 농지임대차계약 확인대장을 갖추어 두고 임대차계약증서를 소지한 임대인 또는 임차인의 확인 신청이 있을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차 계약을 확인한 후 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토록 되어 있으며, 계약증서여백에 확인일자인을 날인하고 인영 안에 확인일자와 농지임대차계약 확인대장에 등재번호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2013년도에 받은 임대차계약서 103건에 대하여 농지임대차계약 확인대장에 등재하지 아니하고 공부정리.
- ▶ 철저한 업무연찬으로 이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 요구

## 13. 산불진화장비 관리 소홀

- 국민의 재산과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산불발생시 신속한 출동으로 조기에 진화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읍면에 배부한 산불진화장비를 산불진화장비대장에 기록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되어 있으나, 소방호스 외 3건의 산불진화장비에 대하여 장비대장에 기록하지 아니함
- ▶ 산불진화장비대장에 기록·비치하고 철저한 업무연찬으로 이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 요구.

#### 14. 회수 주민등록증 인계 지연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에 의거 시장·군수·구청장은 종전의 주민등록증을 회수하여 파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주민등록사무편람」에서는 읍·면·동장은 회수한 주민등록증을 매월 결산하여 익월 5일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인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회수한 주민등록증 327건에 대하여 회수한 날부터 익월 5일을 초과하여 인계한 사실이 있음
  - ▶ 철저한 업무연찬으로 이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 요구

#### 15. 2012년도 상반기 기술인력동원 훈련통지서 교부결과 부적정

-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제14조 및 재난관리과-6221(2012.05.30)호와 관련하여 2012년도 상반기 기술인력동원 훈련 실시 전 인력훈련통지서를 교부하면서 수령자가 수령증의 확인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나, 인력훈련통지서 수령증의 확인사항을 누락한 채 보관한 사실이 있음.
  - ▶ 철저한 업무연찬으로 이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 요구.